

KRILA Focus
2012. 1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Summary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관리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란 '젠더 변수(gender variable)'를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을 예산에 투영시키는 새로운 예산운영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13년도 예산 편성안을 마련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그 속에 포함시켰다.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 형평성 제고,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국(주)민의 예산참여 기회 확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이 합심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를 충실히 구축하면서 '형식과 껍데기가 아닌 내용과 실질'을 추구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
- I.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성인지 예산편성 _ p2
 - II.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미 _ p4
 - III.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검토와 과제 _ p11
 - IV. 글을 맺으며 _ p18

KRILA Focus 제54호(2012. 12)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02-3488-7321 / lsi@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99)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I.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성인지 예산편성

2012년 11월 말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2013년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였고, 그 속에는 사상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2011. 9. 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공포)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실천된 것이다. 물론 약 1년 반 전에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도입 · 실시에 관한 내용들이 입법 절차를 거쳐 예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난감해 하는 것 같다.

사실, 성인지 예산은 기존의 예산편성 시스템과 전연 다른 시각과 기법(방법론)을 요구한다. 따라서 1년 반 남짓한 준비기간은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사업예산제도)나 다른 기존의 예산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과 관념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각종 통계자료와 실증적 근거가 충실히 구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도 예산편성에 성인지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 조항을 마련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입법 예고한 후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2010년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제도는 금년으로 도입 3년차를 맞이하였지만(2013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하면 네 번째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였음), 성인지 예산편성의 내역과 수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인식 및 역량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제도적 정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초기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경우 제도와 실체가 겹돌고 다분히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세계적 경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시스템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내용을 접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무관심해 왔던 예산의 남·여성 간 차등적 영향(효과)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산의 편성·집행 등 전체 예산과정에 걸쳐 “젠더 형평성(gender equality)”을 구현하고자 제도화한 것은 사회 발전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충실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을 충실히 실천하는 과업은 여간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예산은 숫자(금액)로 된 국(주)민과의 약속인데, 그 숫자가 효율과 공평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과 내역으로 가득찰 때 비로소 예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국(주)민이 낸 세금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 편성내역이 그러한 수준을 충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금년(2012년) 7월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성인지 예산 작성기준(“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불완전성과 취약점이 발견되고, 성인지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는 지방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식 부족과 마인드와 행태의 변화가 더딘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 단추, 첫 출발은 거시적 관점에서 올바른 인식과 방향성을 갖고 다듬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란 ‘성 변수(gender variable)’를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불평등 관점을 예산에 적용하는 새로운 예산 시스템이다. 이는 전통적 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요인들(필요, 상황, 조건, 예산집행 영향)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예산 시스템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작동한다는 것은 예산제도의 영향이 남녀간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의 공공부문에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이 또 다른 지평에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I.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미¹⁾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출현 및 확산과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도입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마침내 가장 강력한 실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이끌어 내었다. 예산이 막대한 재정자원에 힘 입어 정부의 정책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유력한 제도이자 국(주)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자원 배분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의 운영방식과 예산의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1984년 “women’s budget” 수립)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구를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동 제도가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1995년 중국 베이징 개최)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유엔여성기금(UNIFEM) 회의(2001년 브뤼셀 개최)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는 세계적인 예산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 약 100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예산편성의 관점과 관리 방식을 종래와 다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부예산제도에 양성평등 변수를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여성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힘입어 2006년에 성인지 예산을 국가예산제도의 일부로 채택하는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를 이루어

1) 이 부분은 임성일의 글(“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와 과제”, 2012 행정학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등)을 직접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내었다. 그 후 2010 회계연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 되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의 법정 예산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제도적 진보를 의미하는 동시에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예산은 정부가 매년 국(주)민과 행하는 수치로 된 약속이다. 통상 그 속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적과 의지, 사업의 크기와 우선순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 책임성은 예산제도를 잘 구조화해서 실천력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조세정책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들이 국민과 기업의 복지, 분배, 소득, 소비, 저축,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적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잘 정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관리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변수’의 특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을 예산에 투영시키는 새로운 예산운영 방식이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나 여성문제의 해소를 위한 예산분석 수단이 아니고, 모든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함축하는 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예산기법이다. 이는 전통적 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남·여성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요인들(재정수요, 상황, 조건, 특성, 예산집행 영향)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구, 소득 수준(소득 재분배 차원), 지역낙후도(균형발전 차원), 인구 특성(아동·청소년·노인·여성, 교육 수준 등), 사회정의(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장애 여부 등), 지리적 특성(산악지역, 설해지역 등) 등 인문·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중요하게 다루어 온 반면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는 ‘성 변수’들은 고려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이외는 달리 성인지 예산은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 변수로서 성 변수와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한다. 성인지 예산은 전통적 예산이 예산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도외시하였던 남성과 여성 변수를 예산운영의 핵심변수로 간주한다는 점과 성별통계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영역을 인정받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독자적 영역의 구축 배경에는 인권, 양성평등, 여권 신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시대 조류가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결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었는지(또는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산기법 내지 방법론으로 정의된다(Budlender and Hewitt, 2003).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과 필요 그리고 예산배분의 영향 및 수혜와 관련된 내용을 수치로서 표현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소위 “좋은 예산수립(good budgeting)”의 중요한 기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결코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지 않다는 가정 내지 인식 하에 가능한 모든 예산대상을 양성(불)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요와 특성 및 여건 차이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 형평,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적 형평문제를 정부가 관장하는 예산운영 시스템 속에 투입시켜 정치·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수치(재정수입 및 지출사업 금액) 중 상당수가 남성과 여성의 재정혜택 균등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지 예산은 비록 그 영역이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예산운영 관점과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식에 큰 변화를 가하는 힘을 지닌다. 이는 정부의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과 경제적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중심 예산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 이유는 초기단계에서 UN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후진국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원조 주체들은 여성의 권한과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의 조건 내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성인지 예산이 여성 관련 지출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후 성인지 예산이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차츰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예산 부문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갔다. 성 주류화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정책 개발, 연구, 주창, 소통과 대화, 입법, 자원배분, 계획, 프로그램 시행 및 모니터링에 대해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을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Sarraf, 2003). 다시 말해서, 성 주류화란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부문 주체가 예산 및 비 예산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무차별, 동등 상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이 성 주류화를 구현하기보다 여성의 예산혜택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산운영이 남성과 여성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남성 위주의 예산을 운영해온 데 대한 교정과정으로 보인다.

3.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순기능)과 이해 사례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재정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특히, 재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주)민의 예산참여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양성평등을 반영하는 재정사업(노동·금융시장, 교육, 건강 부문 등)을 통해 거시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도 성인지 예산은 재정건전성, 공공

자산 활용의 효율성,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책임범위 조정, 발전전략의 양성평등 개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의 순기능은 다름 아닌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을 대변해 준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인용되는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남녀 공중화장실을 건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각 동일한 금액(예컨대, 1억원)을 안배한다면 이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과 수요(자연적·생리적 상황)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예산 조치가 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남녀간에는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여성 2분 30초, 남성 1분 24초)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였다(2008. 3월). 보행자 도로(보도블록)를 건설할 경우 여성이 보행 시 착용하는 신발(예컨대, 하이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치함으로써 보행 중에 여성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주간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참여기회 면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불리한 예산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남성의 노동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임). 이 경우 야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성인지 예산 조치를 해준다면 남성과 여성의 교육혜택 기회는 차츰 균등화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중년 남성의 당뇨병 발병률이 동년배의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각도에서 연구를 한 결과 여성은 출산을 계기로 조기에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한 사실을 알아 내었다. 그 후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예산 편성 시 남성을 배려하는 예산을 안배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이와 유사한 남녀간 이용사례는 공공헬스센터, 수영장, 교육시설 등 여러가지 예산사업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물론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 부부간 합의에 의한 출산휴가 사용기간 조절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성인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의 행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남녀의 가사업무 분담 등 여러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의 특성과 함의를 지닌다. 그 밖에 교육, 노동, 경제 활동, 사회복지와 보건, 농림수산, 관광 분야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녀간에 서로 다른 필요와 상황을 내포하는 다양한 예산사업들이 존재한다. 만일 특정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수요와 영향을 유발한다면 그 예산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채택되는 것이 마땅하다.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

성인지 예산제도가 내년(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시스템에 접목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주)민에 대한 세금 부과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재정 형평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2년도 예산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전체 재정의 43%를 사용하는데 비해 지방재정은 57%(일반지방재정 42%, 교육지방재정 15%)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지방 성인지 예산의 도입은 성별 재정혜택의 불공평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파이(pie)와 사업의 대상과 공간적 범위를 명실상부하게 국가 전체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중앙재정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사업을 크게 확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국의 경우 성인지 예산대상이 교육, 노동, 경제 활동,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비해 보다 동태적이고 주민 밀착적인 예산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중앙·지방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상당수는 지방단위에서 자금이 지출되고(매칭 자금 부담) 사업이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속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되면 국고보조 성인지 예산사업들에 대하여는 개별 자치단체 차원과 전국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을 병행 실시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방 성인지 예산의 실시는 중앙·지방간 재정이전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앞서 양성(불)평등의 의미와 영향을 내포하는 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선정되는 성인지 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매칭 방식과 비율, 성과관리 등)을 국가와 지방이 협의, 확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의 운영방식도 일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배분과정에서 기존의 인구수, 인구특성 변수 외에 남성과 여성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지방 재정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비록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학습하겠지만(예컨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실천 수단, 운영주체, 운영방식, 성공 및 실패요인, 시행착오, 갈등 및 장애요인 등), 일정한 기반이 형성된 이후에는 선도 자치단체가 탄생해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 성인지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간에 경쟁 및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9월에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예산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두 제도는 비록 도입 목적은 다르나, 재정운영의 참여, 책임성,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지향가치를 갖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성 강화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현안과 수요에 정통한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가 예산편성에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이 양성평등의 요인을 함축하는지를 점검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현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도를 해줄 경우 두 제도는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상호 상승효과를 유발한다.

일곱째, 중장기적으로 지방 성인지 예산은 지출부문 외에 지방세와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방식 등(부과대상, 부과방법, 정책효과)에도 성 관점을 투입하여 현재와 다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성인지 예산이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보하고 조달하는 방식과 내용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III.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검토와 과제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법적 근거와 작성 절차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 2, 〈부칙〉 제2조, 시행령 제40조의 2, 시행령 제63조의 2, 〈부칙〉 제3조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충족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생성하기 위해 금년에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양식과 체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2012년 7월 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였지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확정되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 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의 예산부서와 다른 부서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예산부서와 여성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번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는 사실상 모든 부서와 대부분의 예산사업을 성인지 예산 검토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의지가 표명되었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자치단체 내의 전체 부서간 협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간 협의와 조정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파되고 있다). 이때 만일 전 부서간에 성인지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와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는 사업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한 다음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실시 과정과 체계에 관한 내용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 과정

시기	추진 내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배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 예산부서) - 해당 실·국은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 20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 의회 제출

* 자료: 행정안전부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될 성인지 예산사업을 <표 2>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에서는 성인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예산사업을 크게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필수사업은 크게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고, 권장사업은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 외)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구분	대상 사업	비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 16.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최근 3년간(2009~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권장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 이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 16.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최근 3년간(2009~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 자료: 행정안전부

여기에서 만일 자치단체의 자발적 추진사업을 제외하면,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기준 또한 튼튼한 원리나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게 되는 재정 지출 사업들 가운데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 모두 보다 확고한 원리나 원칙에 입각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기보다 제도 중심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계와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튼튼한 원리나 지향가치, 논리적 일관성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초점을 두고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달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원리·원칙 지향적이면서 실용성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 주류화의 실천 차원에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 적용

하려면 현재와 같은 전년도 답습식 제도 활용방식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선정 원리를 고안하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야만 한다.

〈표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2012년 성별영향분석 사업 중 예산사업은 필수 포함)
지방자치단체	없음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국고보조 외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체계와 주요 내용

지방의 성인지 예산서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지방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설명 자료 속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중앙정부와 차별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서는 크게 성 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 평등 목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하며, 제3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해당부처의 개별사업을 총괄하는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부처의 여건에 따라 1~3개 수준의 목표를 제시함). 사업총괄표는 회계별로 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부처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예산정보와 총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관한 주요 내역(사업명, 예산금액, 정책대상, 사업내용, 성 평등 목표분야, 성 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크게 ① 성 평등 목표, ②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③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④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⑤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과 단위에서 작성되는 개별 성인지 예산사업과 관련된 내용(정보)들이다. 어떤 면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공 여부가 개별 성인지 예산사업이 어떻게 잘 구조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통계와 분석이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해 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정보 유용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표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주요 작성 항목

작성자	작성항목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I. 성평등 목표		
	II.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1. 총괄표	2. 사업별 총괄표	
	3. 기능별 총괄표	4.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1.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2. 총괄표		
	3. 사업별 총괄표		
실·과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 사업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 사업개요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총괄표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별 총괄표	- 소요재원	- 성과목표
		- 성별 수혜분석	

* 자료: 행정안전부

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의 문제와 과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작성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개선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도입되는 예산제도에 대해 중앙정부(특히,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준비기간 면에서나 작성기준(매뉴얼), 역량 강화, 교육·인식·홍보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 결과 성인지 예산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지방의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형식적 면모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은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성인지 예산의 편성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정책 과육’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모든 조직과 대부분의 사업을 망라하는데, 이는 형식논리 면에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크게 도외시하는 접근이다. 현재와 같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방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미미하고, 역량, 교육, 지식, 정보, 통계 등 각종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정책적 의욕을 앞세울 경우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잘못 인식되고 확대된다면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편성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다루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성인지 예산의 발전 차원에서 가장 경계하고 차단해야 하는 현상이다.

셋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제시되기보다 제도 위주의 편의적 접근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정한다(이에 대하여는 앞서 강조한 바이므로 부연하지 않는다).

넷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대상 중 상당수가 여성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 선정되어 성인지 예산이 자칫 ‘여성 위주 예산’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상사업의 선정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여성정책추진 사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 사전적으로 예상된 바이다(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절대 다수도 여성 편중의 경향을 지닌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해 준다.

다섯째, 편성기준에 제시된 예시나 권고사항에 불완전성과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시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의 내용 중 일부는 원인 분석이기보다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낮은 질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통계나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기보다 논설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여섯째, 성 평등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관계 설정이 불분명하다. 예컨대, 제시된 성 평등 목표와 예산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사업과는 연관성이 낮거나 너무 동떨어진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의 경우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성과목표 중에는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일곱째,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암묵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인지 예산의 내실과 효과성 제고보다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결과(성인지 예산사업의 수행 결과) 그것이 거시적으로 주민생활 및 양성평등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취약한데, 이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영향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성인지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영역이 제한되는 문제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인지 예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IV. 글을 맺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집행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수단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특히,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하였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실천적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돋보인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법적 기반을 갖고 제도를 실시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몰아치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하는데 따른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하여는 결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아직 뚜렷한 성과 없이 크고 작은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점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이제 막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회, 시민사회, 일반주민 등 다양한 지방예산의 이해관계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편성에 필수적인 성별 통계와 남·여성 관련 각종 예산분석 정보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순전히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의 시행을 성급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각종 부작용들이 양산될 뿐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갈 길도 에둘러 가는 정책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신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정부의 참된 의지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창의적 도전이 지속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몇 년간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냉철히 분석하고 인식하는 자기성찰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막 시작한 지방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주민 공감적인 정책을 고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와 합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발전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 중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www.krila.re.kr

2011

- 연구총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통권 457)
-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2010

- 연구총서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통권 450)
- 통권 449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통권 448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 통권 447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 통권 446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 통권 44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 통권 444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2009

- 연구총서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통권 443)
- 통권 442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 통권 441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자산 측정 및 관리 방안
- 통권 440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 통권 439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 통권 438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 통권 437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 통권 436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통권 435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 통권 434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 통권 433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통권 43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 통권 43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 통권 430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 통권 429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 통권 428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